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소 방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양 권 석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09년 3월 1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3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고등교육법(제14조 교직원의 구분)의 개정('09. 1.30)으로 전문대학학 교장의 명칭을 '학장' 대신 '총장'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충북도립대학 학교장 명칭 변경 : 학장 → 총장

- 「충북도립대학」의 위상 제고와 학생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학교장 명칭을 '학장'에서 '총장'으로 변경

나. 다른 조례 개정

-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
-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

4. 검토의견

이 개정조례안은 2009년1월30일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충청도립대학 학교장의 명칭 ‘학장’을 ‘총장’으로 변경하기 위해 제출되었음.

고등교육을 하는 학교의 장은 기본적인 권한이나 업무에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의 종류¹⁾를 구분하지 않고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도 학교의 장으로 총장 또는 학장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칭 사용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2009년1월30일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충청도립대학 학교장의 명칭을 ‘학장’에서 ‘총장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) 고등교육법 제2조(학교의 종류)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. <개정 2007.10.17>

1. 대학
2. 산업대학
3. 교육대학
4. 전문대학
5. 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(이하 "원격대학"이라 한다)
6. 기술대학
7. 각종학교